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9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
2.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 제도 신설 등	12
※ 참고자료	17
1. 쿤밍-몬트리올 GBF 주요내용	17
2.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	18
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19
4. 대행제도 관련 유사입법례 규정	2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45조의7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u> <u>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기부하는 방식</u> <u>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기부하는 방식</u> <u>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u> <u>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u>

현행	개정안
<신 설>	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0(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실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개정안
<신 설>	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1(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1. 제45조의7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사업추진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5조의8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3. 제45조의10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현행	개정안
	<u>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⑤ <u>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1차년도 자연환경복원 대상지 조사·평가 결과²⁾ 대상지가 120개소에 달하고 있어 재원의 한계 등으로 훼손지 전체에 대한 복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 3년간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 개요	예산 (집행현황)			
			'21	'22	'23	'24
국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 전국토 훼손지 조사·평가에 기반한 복원대상지 도출 및 체계적 생태복원(장항 국가습지복원, GB내 자연환경복원)으로 국가 선도 대표 복원모델 마련	-	-	-	3,765 (-)
	수변녹지 조성관리사업 (수계기금)	• 4대강수계 매수토지 대상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상수원 수질 개선 도모	26,406 (23,888)	23,487 (20,901)	23,781 (22,740)	27,492 (3,811)
정부출연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 국립공원 내 자연·인위적으로 훼손된 독립훼손지, 외래목초지 등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	4,326 (4,326)	4,326 (4,326)	2,163 (2,163)	2,163 (2,163)

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을 5개 권역[강원, 경기, 경상, 전라(제주 포함), 충청]으로 구분하여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전국의 20%를 조사할 예정임.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 개요	예산 (집행현황)			
			'21	'22	'23	'24
지자체 (보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70%)	• 단절·훼손된 도시생태축을 연결·복 원하여 도시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생태기능 향상 도모	10,620 (10,620)	23,579 (23,579)	15,830 (15,830)	14,667 (14,067)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국비 70%)	•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훼손된 백 두대간 등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 원(생태통로 조성)으로 생태계 연 결성 확보	4,435 (4,436)	6,496 (6,496)	4,656 (4,656)	3,259 (3,259)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 (직접사업 국비 100%, 지자체보조 50~70%)	•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관리를 통한 국가생태자원의 항구적인 보 전도모	3,500 (2,643)	3,000 (2,567)	2,100 (2,022)	2,400 (2,140)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직접사업 국비 100%, 지자체보조 50~70%)	•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훼손된 습지에 대한 복원	3,935 (662)	6,743 (5,708)	5,860 (2,109)	2,930 (993)

※ 출처: 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2.12)에서 협약당사국은 2030년까지 전 국토 훼손지의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에 합의³⁾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국가, 지자체, 민간이 모두 참여하여 훼손지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③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체계적 지원·관리에 기여할

3) 참고자료1.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해당 지역의 관리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추진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

4)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 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음에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45조의11제4항제3호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으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 제도 신설 등

개정안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② 거짓·부정 등록 등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며, ③ 현행법 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명칭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효과적 시행 및 생태·환경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에게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안
<신설>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여부 등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의8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

현행	개정안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u>자연환경보전사업의</u>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 <u>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u> ”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연환경보전사업을</u>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u>항을 변경한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u>자연환경보전사업</u>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u>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 ----- ----- <u>자연</u> <u>환경복원사업의</u> ----- ----- <u>자가</u> ----- ----- <u>자연환경복원사업을</u> ----- -----.

현행	개정안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동의----- ----- ----- -----.

개정안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생태적·환경적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행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자 등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행자의 업무범위, 결격사유, 준수사항, 실적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업법례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를 규정하면서, 대행자의 업무범위, 결격사유, 준수사항,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둘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사업비를 반환하여 주는 사업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과는 사업의 내용, 종류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두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연환경보전사업과 자연환경복원사업 비교]

구분	자연환경보전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사업목적	○ 생태계 복원 활성화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내용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자연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소요된 사업비만큼 부담금을 반환	○ 전(全) 국토의 훼손지 조사·평가에 기반한 후보지역 도출 및 체계적 생태복원 추진
사업종류	○ 소생태계조성 ○ 생태통로 조성사업 ○ 대체자연조성사업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관리사업 ○ 도시지역 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생태계 기능향상사업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 멸종위기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 협약등록 습지 복원사업 ○ 하천 보전·복원지구 안에서 하천복원사업 ○ 자연환경복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출처: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1

5) 참고자료4. 대행제도 관련 유사입법례 규정(환경영향평가법)

※ 참고자료

1. 쿤밍-몬트리올 GBF 주요내용('22.12)

비전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 (2050 Goals)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 (2030 Action Targets)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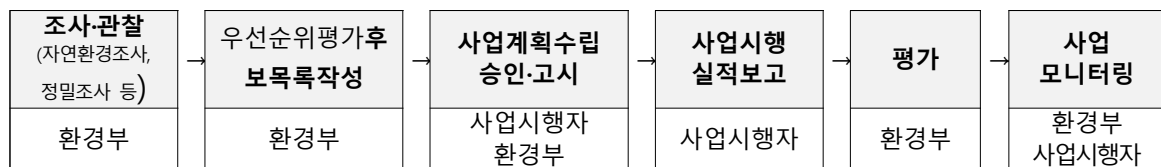
2.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

□ 자연환경복원 대상 및 체계 (법 제2조 및 제4장의2)

- (정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 (복원대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의 기능향상, ▲단절된 생태계 연결 및 야생동물 생태통로 등 설치, ▲습지보호지역등 훼손된 습지복원,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하천법에 따른 보전·복원지구안에서 하천복원, ▲기타 환경부장관 고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추진체계) 조사-계획-시행-모니터링 등 소과정 체계적 추진



□ 자연환경복원 추진현황

- 자연환경복원대상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추진중

복원대상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근거법률	자연환경복원사업 연계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환특)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법 제14조	법 제2조 제19호 가목
도시생태복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기금)	도시생태축복원	법 제43조의2, 제54조	법 제2조 제19호 나목
단절 생태계 연결 및 생태통로 설치	국토생태 네트워크구축 (환특)	백두대간 등 생태축 연결복원	법 제45조, 제54조	법 제2조 제19호 다목
훼손 습지 복원	습지보전관리 (기금)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습지보전법 제17조, 제22조의2	법 제2조 제19호 라목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	-	-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협약등록습지 복원	-	-	-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하천 보전·복원 지구안 복원	-	-	하천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2조 3호
기타 환경부장관고시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4대강 수계법 자연공원법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환경부, 지자체)	전국자연환경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습지조사,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등 활용
----------------------------------	---



훼손지 복원 대상 후보지 선정 (환경부)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복원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여 우선 순위선정
----------------------------------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 수립 (환경부,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현황분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사업시행자는 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환경부, 사업시행자)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시행
------------------------------------	--------------------------------



추진실적 보고 및 복원사업 평가 (환경부)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환경부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차등화
---------------------------------------	---



유지·관리(사후관리) (사업시행자)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된 자연환경이 지속되도록 일정 기간 유지·관리
-------------------------------	---

4. 대행제도 관련 유사입법례 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보고·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